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2.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철도차량’을 ‘철도’로 약칭하는 것은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바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하고, 교통약자 대상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철도사업자를 철도 좌석 예약이 가능한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철도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수정하며, 예약체계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다목 중 “위한 철도차량(이하 “철도”라 한다)”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위한 철도차량”으로 한다.

안 제1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는”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업자는”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를”을 “교통약자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좌석 예약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예약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제2조(정의)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2. ----- ----- ----- ----- -----.	2. ----- ----- ----- -----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가·나. (개정안과 같음)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다. ----- ----- ----- -----위한 <u>철도차량(이하 “철도”라 한다)</u>	다. ----- ----- ----- -----위한 <u>철도차량</u>
라. ~ 사. (생략)	라. ~ 사. (현행과 같음)	라. ~ 사. (개정안과 같음)
3. ~ 8. (생략)	3. ~ 8. (현행과 같음)	3. ~ 8. (개정안과 같음)
<신설>	<u>제15조의2(철도의 이</u>	<u>제15조의2(철도의 이</u>

	용보장) 「<u>철도사업법</u>」에 따른 철도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용보장) ① 「<u>철도사업법</u>」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업자는----- ----- ----- -----교통약자를----- ----- -----. ② 제1항에 따른 좌석 예약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예약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48
----------	------

발의연월일 : 2024. 7. 23.

발 의 자 : 임오경 · 이기현 · 김재원

박 정 · 진선미 · 한민수

박수현 · 임미애 · 강유정

윤후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시스템 확대에 의해 교통수단의 좌석 예매 과정이 비대면으로 다수 전환되었으나,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일반좌석의 예약에 있어서 비 교통약자들과 동일한 예약 시기, 방식 등을 적용받고 있어 좌석의 예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현재 철도 등 일부 교통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설날, 추석 등 좌석 예약이 집중되는 특정 기간에 한정하여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좌석을 예약할 수 있도록 따로 예약기간 등을 두고 있는데, 이용자의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해 원활한 좌석 예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또한 철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사업자별로 서비스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KTX, SRT 등 간선철도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

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등).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철도차량’을 ‘철도’로 약칭하는 것은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바 현행 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하고, 교통약자 대상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 해야 하는 철도사업자를 철도 좌석 예약이 가능한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철도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수정하며, 예약체계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2(철도의 이용보장) ①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좌석 예약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예약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5조의2(철도의 이용보장) ①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좌석 예약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예약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u>